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공고 제2024-120호

# 2024년 하반기 신규직원 축산물품질평가직(6급) 채용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축산물등급판정업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사업, 축산물유통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2024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축산물품질평가직(6급) 채용공고

## 1 채용분야 및 내용

직군(직급)	구분	인원	업무내용[붙임1 참조]
축산물품질평가직(6급)	신입	16명	• 축산물품질관리(등급판정·이력제), 축산물유통정보 조사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등

## 2 근무조건

구분	내용
임용일(예정)	2024. 12. 16.(월)
근로형태	정규직(수습 3개월 후 정식임용)
근무지	전국
근무시간	전일제(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
보수 및 복리후생	사규에 따름(신규직원 초임은 알리오(ALIO) 공시자료 참고)

- ※ 1. 임용일은 경력자의 경우 행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수습기간 이후 연고지 및 부서별 인력수급현황을 고려하여 근무지 배치  
 3. 근무시간은 9:00~18:00이며, 근무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구분	내용																		
응시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단, 기관 정년[만 60세]에 도달하는 자 제외)('25년 2월 졸업예정자 응시 가능, '24년 12월 16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li> <li>외국어능력 기준 점수 이상인 자(택 1)                &lt;외국어능력 종류 및 기준점수표&gt;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4">영어</th> <th>일본어</th> <th>중국어</th> </tr> </thead> <tbody> <tr> <td>TOEIC</td> <td>TOEFL(iBT)</td> <td>New TEPS</td> <td>G-TELP (Level 2)</td> <td>JPT</td> <td>新HSK 5급</td> </tr> <tr> <td>700점</td> <td>80점</td> <td>265점</td> <td>76점</td> <td>700점</td> <td>180점</td> </tr> </tbody> </table> </li> </ul>	영어				일본어	중국어	TOEIC	TOEFL(iBT)	New TEPS	G-TELP (Level 2)	JPT	新HSK 5급	700점	80점	265점	76점	700점	180점
	영어				일본어	중국어													
TOEIC	TOEFL(iBT)	New TEPS	G-TELP (Level 2)	JPT	新HSK 5급														
700점	80점	265점	76점	700점	180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역산하여 2년 이내의 자료를 인정함 (유효기간 내 공인어학 성적만 인정)</li> <li>- 단,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성적 정보는 최대 5년 이내의 자료를 인정함</li> </ul>																		
결격사유	• 「인사규정」제22조 및 「직원채용 업무지침」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붙임2 참조]																		

## 4

### 전형절차 개요

① 서류전형	② 필기전형	③ 면접전형	④ 최종합격자 결정	⑤ 임용적격여부 조회
합격배수 : 20배수  • 입사지원서(적·부) • 자기소개서(100점)	합격배수 : 2배수  • 인성검사(적·부) • 직업기초능력(100) • 직무수행능력(100) - 축산학개론 - 식육학 - 축산식품관련 미생물학	• 직무수행능력 기반 상황·경험 면접(100점)	합격배수 : 1배수  • 필기전형의 직무수행능력평가(50%) + 면접(50%)	적격자 선발  • 비위면직자, 결격사유 조회 • 채용신체검사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채용상담 안내]

- 일시 : 연중 상시운영
- 방법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접속
- 내용 : 2024 축산물품질평가원 신규직원 채용 전반 Q&A 답변
- 경로 : 카카오톡 실행 → 하단 카테고리 중 오픈채팅 클릭 → 좌측 상단 '검색' →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정보 공유방' 검색 후 채팅방 입장

## 5

### 전형절차 세부사항

전형	평가기준 및 배점	선발배수	합격자 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	• 입사지원서(적·부) • 자기소개서(100점)	20배수	• 응시자격 적격자 중 자기소개서 평가 4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부적격 처리
필기	• 인성검사(적·부) •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직무수행능력평가(100점) - 축산학개론 - 식육학 - 축산식품관련 미생물학	2배수	• 인성검사 적격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40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별 40점 이상, 3개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
면접	• 직무수행능력 기반 상황·경험 면접(100점)	-	• 면접평점 60점 이상인 자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전형의 직무수행능력평가(50%) + 면접(50%)	선발인원 1배수	• 직무수행능력평가와 면접결과를 50 : 50으로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①~⑤ 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순) ③ 지역인재(이전지역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순) ④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자(직무수행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순) ⑤ 서류심사(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은 자
임용적격여부 조회	• 비위면직자, 결격사유 조회 • 채용신체검사	적·부	• 적격자 선발 ※ 색각 이상자는 신체검사 합격판정을 받았더라도 부적격

-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면접전형 참여 포기자 발생 시 필기전형(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 순 최대 5순 위까지 예비합격자를 선정(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락자 제외)
- \* (임용 차순위자)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 차순위자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 \* 서류, 필기 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 전형별 세부 평가요소

구분	내용	
필기전형	인성검사	태도,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등의 인성전반 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직무수행능력평가	축산학개론, 식육학, 축산식품관련 미생물학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기반의 경험·상황면접으로 직무 및 조직적합도 평가	

- ※ 1. 인성검사 200문항  
 2. 직업기초능력평가 25문항, 직무수행능력평가는 75문항(과목별 25문항)

## 6 가점 및 우대사항

### □ 서류전형 가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사회 형 평 적  인 력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법에 따름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경증:만점의 5% 중증:만점의 7%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만점의 5%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임용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한함		
	이전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이며 졸업(예정)인 자	만점의 5% 또는 각 채용목표제 적용	
	비수도권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며 졸업(예정)·중퇴·제적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자 격 증	공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만점의 2%	
		IT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만점의 3%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만점의 1%
	직무	통계	정보처리기술사	만점의 4%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만점의 3%
		사회조사분석사(2급)	만점의 2%	
회계	전산세무, 전산회계, 재경관리사	만점의 3%		
직무경험	축산물품질평가원 체험형 청년인턴 ※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일경험 수련생), 현장실습생 제외	우수인턴	만점의 5%	
		수료자	만점의 3%	
		대상	만점의 3%	
		최우수 이하	만점의 1%	
		입상자	만점의 3%	
		수료자	만점의 1%	
정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 2024. 1. 31. 기재부 고시 기준, 부설기관 제외	3개월 이상 수료자	만점의 1%		

### □ 필기전형 가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사회 형평적인력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법에 따름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경증:만점의 5% 중증:만점의 7%
	이전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충청권(대전·충북·충남· 세종)이며 졸업(예정)인 자	채용목표제 적용
	비수도권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며 졸업(예정)·중퇴·제적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채용목표제 적용

### □ 면접전형 가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사회 형평적인력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법에 따름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경증:만점의 5% 중증:만점의 7%
	경력단절여성	임신·출산·육아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현재 무직)	만점의 3%
	이전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충청권(대전·충북·충남· 세종)이며 졸업(예정)인 자	채용목표제 적용
	비수도권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며 졸업(예정)·중퇴·제적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채용목표제 적용

###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우대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우 대	①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동점자 우대 (순서 : ①~⑤)	
	②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순)		
	③ 지역 인재	이전지역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충청권(대전· 충북·충남·세종)이며 졸업(예정)인 자 (이전지역, 비수도권 순)
		비수도권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이며 졸업(예정)·중퇴·제적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④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직무수행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순)			
⑤ 서류심사(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은 자				

#### 〈가점 부여 상세 기준〉

1. 사회형평적 인력 가점은 대상별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함
3. 이전지역 지역인재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상세 내용은 [붙임3] 참고
4. IT 및 직무 자격 가점은 각각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하며, 자격사항 가점 총점은 만점의 10%
5. 직무경험 가점은 항목별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
6.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의 경우 채용공고상의 근무기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사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7. 정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체험형 청년인턴의 상세 내용은 [붙임4] 참고

## 7

##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접수	(공고) 9. 27.(금) ~ 10. 14.(월), 18시까지 (접수) 10. 2.(수) ~ 10. 14.(월), 18시까지	-
서류 합격자 발표	10. 21.(월)	•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증빙서류 제출	10. 21.(월) ~ 10. 23.(수), 16시까지	• 채용홈페이지 업로드
필기 대상자 발표	11. 1.(금)	•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필기전형	11. 9.(토)	• 필기장소: 별도공지
필기 합격자 발표	11. 13.(수)	•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면접	11. 18.(월) ~ 11. 19.(화)	• 면접장소: 별도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11. 26.(화)	•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신체검사 및 기초서류제출	11. 26.(화) ~ 12. 3.(화), 16시까지	• 신체검사는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하며 서류는 채용홈페이지 업로드
임용	'24. 12. 16.(월)	• 경력자의 경우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홈페이지(<https://ekape.plusrecruit.co.kr>) 조회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과 장소 및 채용방식은 우리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8

## 제출서류 안내

전형단계	대상	제출서류	제출대상 및 용도	비고
서류전형	공통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서류심사용	• 온라인 접수
증빙 서류제출	필수	• 외국어 취득 증명서(성적표 등)	• 지원요건 확인	• 서류제출 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 직무경험 가점 대상자는 기관 내 데이터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최종학력증명서	• 이전지역·비수도권인재 확인	
	해당자	• 교육증명서(성적증명서 등)		
		• 취업지원대상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 중증은 중증장애인확인서 함께 제출	• 장애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저소득층 대상자	
		•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경력단절여성 대상자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 경력사항 입력자			
• 자격증 취득 증명서(사본 등)	• 자격증 입력자			
결격사유 조회	군경력자	•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 확인	•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제출
	공통	• 주민등록등본	• 비위면직자 조회	
		• 기본증명서(상세)	• 결격사유 확인	
		• 채용신체검사서(색각 검사 필수)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24. 9. 27.)** 발급분만 인정. 단, 발급일이 무관한 서류는 제외
- ※ 증빙서류 미제출, 불일치, 증빙 확인 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판단 및 탈락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
- ※ 제출서류 내 원본 확인 번호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본 확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예: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 평가위원 미제공

〈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24.5월) 〉

○ 제출서류 요구 : 지원자의 증빙자료는 합격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한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에 최소한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

1.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해당 증명서는 반드시 정부 24(www.gov.kr)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2.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제출
  - \* (방문발급) 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
  - \* (온라인발급) 장애인직업능력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
3.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이 공고일(포함) 기준 3개월 이전이어야 함

**9**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시

- ※ 입사지원서에 **성별, 군대 경력,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가족관계, 연령** 기재 금지
- ※ 자기소개서에 **성명, 성별, 군대 경력,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가족관계, 연령, 기관명(우리원 포함)·업체명**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검토사항 〉

○ 블라인드 위반

- 개인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의 편견요소] 확인

항목	위반 예시
성명	성명이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 (예시) 동아리 살림꾼 ‘홍길동’
성별	성별이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결혼 후 남편과 함께 / 00여대를 졸업하고 / 여성과학기술인 사업을 지원받으며 / 동아리 활동 중 친한 형(누나, 언니)에게 / 장남으로 태어나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군대 경력	군대 경력으로 성별이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군대 의무 복무 시절, 00병 경험을 통해 / 군수병·전경·행정병·조리병으로 복무하며
출신 지역	지원자 본인 또는 가족의 출신지가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태어나 / 대구에서 태어나 /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출신 학교	출신 학교가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00대학교 장학금 수상 / 00대학교 회장 / 00대학교 조교 / 00대학교 LINC 사업단 / 00대학교 학생연구원 / 재학시절 00대 총장상을 수상 / ‘SNU 발표와 토론’ 수업을 수강
가족관계 (학력·직업·재산)	가족관계가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교직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 축평원에서 일하는 친언니를 보며
연령	연령이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88년 올림픽이 개최된 해에 태어나 / 2019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관명 및 업체명	출신 기관명 및 업체명이 유추 또는 확인이 되는 경우 (예시) 축평원에서 인턴을 하며 / 농식품부에서 3년간 계약직으로 일하며



- ※ 부득이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여 기재(00대학교에서 기계 관련 전공을 통하여 / 00대학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
- ※ 현 주소 및 메일 주소 작성 시 학교명 및 직장명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불성실 기재

- 의미없는 문자의 나열, 동일 내용 문구 반복, 기관 명칭 오기입(타 기관 지원), 평가항목 중 공란 또는 작성 분량의 50자 미만 작성 확인

**〈 블라인드 위반사항 확인 결과 및 처리 방안 〉**

기재 위치	구분	확인 결과	처리 방안
입사지원서	성별	'블라인드 위반'	부적격
	군대 경력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가족관계(학력·직업·재산)		
자기소개서	연령	'블라인드 위반'	해당 단어당 5점 감점
	성명		
	성별		
	군대 경력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가족관계(학력·직업·재산)		
연령			
	기관명(우리원 포함) 및 업체명		

## 10 채용비리 구제방법 및 이의신청 안내

□ 피해자 구제방법

-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 순번 부여

\* 적격자: 과락,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 순번에 따라 구제

□ 이의신청

전형구분	합격자 발표일	이의신청 기간
서류	10. 21.(월)	10. 21.(월) ~ 10. 23.(수), 3일간
필기	11. 13.(수)	11. 13.(수) ~ 11. 15.(금), 3일간
면접(최종)	11. 26.(화)	11. 26.(화) ~ 12. 11.(수), 16일간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이의신청메뉴에 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후 답변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11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 (청구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 (청구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이 되지 않은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10]를 작성하여 메일(recruit@ekape.or.kr)로 신청
    - \* 채용서류 반환 신청서 접수 시 14일 이내 송부
  - (청구대상) 전자서류를 제외한 제출 서류
  - (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 12 기타

- 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기재 착오, 기재 누락, 증명서 위·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마감 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니 접수 기간 내 미리 지원서 작성 및 최종 제출을 바람(접수마감시간 연장 없음)
- 채용공고는 우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함
- 동일 공고기간 내 진행 중인 다른 분야 채용에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 지원 사실 확인 시 탈락 처리
-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사규정」제22조, 「직원채용 업무지침」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채용 업무지침」제22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전형 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개발처(☎ 044-410-7208)로 문의

**[붙임 1] 직무기술서**

##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서 - 축산물품질평가직

채용분야		축산물품질평가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21. 식품가공	01. 식품가공	01. 식품가공	03. 축산식품가공
		02. 식품저장	03. 축산식품저장
24. 농림어업	02. 축산	01. 축산자원개발	01. 사료생산 02. 종축
		02. 사육관리	01. 젖소사육 02. 돼지사육 03. 가금사육 04. 한우사육
02.경영·회계·사무	01.기획사무	03.마케팅	02.고객관리
<b>기관 주요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유통사업, 조사/연구, 정보화, 축산(물) 생산 컨설팅 및 지도교육·홍보, 국제협력,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등 기타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과 부대사업</li> </ul>		
<b>직무수행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축산식품저장)</b> 축산물(소, 돼지, 가금류, 계란) 등급판정 및 등급판정결과의 피드백·컨설팅 제공, 등급판정 관련 제도 및 기준 연구·조사, 등급판정인(印)과 관련 장비, 작업장 준수사항 등을 점검·관리하는 업무</li> <li>○ <b>(축산식품가공)</b> 축산물품질공정관리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지정심사 및 지정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위생관리 등)</li> <li>○ <b>(축산물이력제사업)</b> 가축 및 축산물 이행주체(생산자, 유통업자) 관리, 이력 정보(소, 돼지, 가금산물)의 조사·검증, 생산·유통 현장 점검과 장비 등 관리</li> <li>○ <b>(축산물유통사업)</b>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 유통단계별 가격, 경로 등의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축산물유통사업 업무</li> <li>○ <b>(축산자원개발 및 사육관리)</b>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제도, 축산 관련 통계 등을 지도교육·홍보하는 업무</li> <li>○ <b>(고객관리)</b> 기관 인지도 및 제도 수용도 제고를 위해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대응·지원, 고객 요구사항 등을 대응·관리하는 업무</li> <li>○ <b>(사무행정)</b>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관리, 사무자동화 관리 운용 등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li> <li>○ <b>(연구개발)</b>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기준 및 기술개발</li> <li>○ <b>(국제협력사업 관리)</b> 수원국(개발도상국)에 대한 축산물유통관리체계, 이력제, 등급제 교육으로 한국형 표준화 유도</li> </ul>		

전형방법	○ 서류전형 → 필기전형(인성검사·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 면접전형 → 임용(수습3개월)
일반요건	○ 공고문 참고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식품저장·축산물이력제사업) 축산물 등급·이력제도와 관련 법령(축산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식, 축산전공 지식</li> <li>○ (축산식품유통사업) 축산물의 유통흐름·가격 및 수출입 동향에 대한 지식, 기초 자료 조사를 위한 유통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지식</li> <li>○ (축산식품가공) 축산물의 품질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지식</li> <li>○ (축산자원개발 및 사육관리) 축종별 사양관리 방법, 축산경영, 관련 통계 활용 지식</li> <li>○ (고객관리) 고객 관계·심리·응대기술, 고객 데이터 관리, 고객요구 분석</li> <li>○ (사무행정) 문서기안 절차, 문서의 체계, 문서작성 규칙, 문서관리 규정, 조직도 이해, 보안 규정,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매뉴얼,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매뉴얼,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매뉴얼,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기본 회계지식, 회계규정, 회의에 사용되는 물품과 장비 운영매뉴얼, 직제규정, 사무기기운용 매뉴얼</li> <li>○ (연구개발) 각 축종별 사양관리, 도축 및 유통체계 등 전반지식</li> <li>○ (국제협력사업 관리) 국내외 공적자원개발사업(ODA) 이해</li> </ul>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식품저장·축산물이력제사업) 축산물품질평가 및 관리 기술, 이력관리 기술</li> <li>○ (축산식품유통사업) 축산물의 가격 및 수출입 동향에 대한 정보입수 및 분석 기술</li> <li>○ (축산자원개발 및 사육관리) 정보수집 및 분석 기술, 고객 니즈에 맞는 컨설팅 항목 선정 능력, 컨설팅 내용 구조화 능력, 설득 기술</li> <li>○ (고객관리) 다양한 요구와 고객 형태 등에 맞는 응대 기술, 고객 니즈에 맞는 고객요구 분석, 소통 및 설득 기술, 문제 상황 분석 기술, 대응매뉴얼 개발 및 수정 능력</li> <li>○ (사무행정) 부서(팀)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 관리, 사무자동화 관리 운용 등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li> <li>○ (연구개발)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기준 및 기술개발</li> <li>○ (국제협력사업 관리) 수원국(개발도상국)에 대한 축산물유통관리체계 이력제, 등급제 교육으로 한국형 표준화 유도</li> </ul>
직무수행태도	○ 공직자로서의 공공성, 법규 준수, 안전·위생·방역사항 준수, 민원인과의 적법관계 유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주인 의식, 책임감, 청렴성, 협력적 태도
직업기초능력	○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수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참고	○ <a href="http://www.ncs.go.kr">www.ncs.go.kr</a> 홈페이지 → NCS.학습모듈검색

## [붙임2]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불이행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용하지 아니한다.

「직원채용 업무지침」 제13조(신체검사) ① 원장은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물품질평가직 지원자 중 색각이상자는 신체검사 합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1.>
- ③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징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징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3.>

## [붙임3] 우대사항

### 1.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2.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4.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로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급받은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1.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급자의 친권인, 후견인 등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6.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 대학(전문대학 포함)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제적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 (예시) 단국대 천안캠, 동국대 경주캠, 상명대 천안캠, 연세대 원주캠, 홍익대 세종캠, 고려대 세종캠, 건국대 글로벌캠 등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 -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가.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나.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학교 및 국내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7. 이전지역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 지역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일부 발취)

### 가.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범위

- 해당 이전지역(대전·충북·충남·세종)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 지역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 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 이상 등록하고, 최종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 이전지역 학교의 범위

- 해당 이전지역(대전·충북·충남·세종)에 소재한 학교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이전지역학교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1) 본교가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전지역 외의 지역대학
- (2) 외국학교 및 국내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 (3)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 (4)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가.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나.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8.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9.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로 시군구 민원센터 또는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붙임4] 정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기준

### 1. 정부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 2.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347개 공공기관(24. 1. 30.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 부설기관 제외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8)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24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40)	<p>(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p> <p>(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p> <p>(보훈부)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p> <p>(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p> <p>(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p> <p>(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p> <p>(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p> <p>(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p> <p>(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p>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40)	<p>(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p> <p>(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p> <p>(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p> <p>(중기부) (주)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p> <p>(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p> <p>(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p> <p>(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p> <p>(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p> <p>(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p> <p>(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p> <p>(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p> <p>(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p> <p>(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p> <p>(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p> <p>(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p> <p>(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p> <p>(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p> <p>(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p> <p>(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p>





[붙임6] 자기소개서

## 자 기 소 개 서

1. [자기개발능력] 최근 5년 동안에 귀하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귀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500자 내외)

\* 다른사람과 차별화 된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작성

2. [문제해결능력]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십시오. (500자 내외)

3. [대인관계능력]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유지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500자 내외)

4. [조직이해능력] 우리 기관에 입사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른 사람과 차별화 된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작성해 주십시오. (500자 내외)

5. [직업윤리]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십시오. (500자 내외)

6. [경험 혹은 경력사항] (2,000자 내외)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력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내용, 소속조직이나 활동에서의 역할, 활동결과 등 작성

※ 채용분야별 편집하여 입사지원 페이지 구성 예정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채용절차 진행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직원 채용을 위해 관계법령(「개인정보보호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최종학력, 경력, 이수한 교과과정,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채용절차 진행 및 채용 지원자격·우대사항 확인	<b>「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90일</b> (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내부 인사관리를 위해 준영구보유)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b>국가보훈 및 장애 관련 정보</b>	채용절차 진행 및 채용 지원자격·우대사항 확인	<b>「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90일</b> (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내부 인사관리를 위해 준영구보유)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b>증명서 생성(발급)기관</b>	이름, 생년월일, 학력, 경력,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b>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b>	<b>진위여부 확인 소요 기간</b>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채용절차 진행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붙임8] 서류심사**

## 서류전형 심사표

수험번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입사지원서 심사	적격	부적격	사유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여부	적격	부적격(불성실 기재)	사유
자기 소개 서	구 분	주요 관찰 사항	평정 점수
	일 반 문 항	자기개발 ○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행동 증거의 구체성	/ 12점
	문제해결	○ 문제가 발생한 상황의 구체성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증거의 구체성	/ 12점
	대인관계	○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치관(생각) 또는 행동 증거 표출의 구체성	/ 12점
	조직이해	○ 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한 동기와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12점
	직업윤리	○ 직장인으로서 직업윤리의 이해정도 및 본인의 가치관과 결부한 효과적인 표현 여부	/ 12점
	경험 혹은 경력사항 기술	○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설명의 구체성, 역량의 정도,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경험과 경력에 대해 효과적인 기술 여부	/ 40점
우대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기타 가점		
감점	<i>감점된 사항 기술</i>		
평가점수 합계			

**※ 평가점수 기준표**

구분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일반문항	12점	10점 이상	7~9점	4~6점	2~3점	2점 미만
경험 혹은 경력사항 기술	40점	32점 이상	23~31점	14~22점	5~13점	5점 미만

**[붙임9] 면접시험 평가표**

## 면접전형 심사표

수험번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구 분	주요 관찰 사항	평정 점수
용모·품행 및 성실성	<input type="radio"/> 복장(머리, 옷매무새 등)은 단정한가? <input type="radio"/> 응답 자세, 시선, 예의범절은 바른가? <input type="radio"/>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상호존중과 배려에 관한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15점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input type="radio"/> 침착성과 적극성을 겸비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15점
의사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input type="radio"/> 의사 표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는가? <input type="radio"/> 질문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가? <input type="radio"/> 주관이 뚜렷한가?	/ 15점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input type="radio"/> 지원 분야에 대한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input type="radio"/> 일반교양 및 상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15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input type="radio"/> 가치관이 우리 기관의 업무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radio"/> 우리 기관에 대한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input type="radio"/> 협동심과 사회성이 좋은가?	/ 20점
인성 및 적성	<input type="radio"/> 인성 및 적성의 적절성은?	/ 20점
우대가점	<input type="radio"/> 취업지원대상자	
	<input type="radio"/> 장애인	
	<input type="radio"/> 기타 가점	
감점	<i>감점된 사항 기술</i>	
평가점수 합계		

**※ 평가점수 기준표**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배점(20점)	18점 이상	16~17점	14~15점	12~13점	12점 미만
배점(15점)	14점 이상	12~13점	10~11점	9점	9점 미만



## [붙임10]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